

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 2019. 7. 29.(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도시정책과	담당자 • 과장 이상주, 사무관 이종현·오원택, 주무관 박준호 • ☎ (044) 201-3708, 3711		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3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3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

###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.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공업지역 방화지구 건폐율 혜택 강화(70%→80%~90%)...안전성 제고
- 지자체가 용도지역 추가 세분 가능토록 제도 개선용적률 선택 폭도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방자치단체,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 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)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

-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·2·3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.
- 또한,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·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.

#### 《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개정사항 》

구분	현행 용적률 (%)	개정 용적률 (%)	구분	현행 용적률 (%)	개정 용적률 (%)	
						구분
주거 지역	제2종전용	100~150	상업 지역	중심상업	400~1,500	200~1,500
	제2종일반	150~250		일반상업	300~1,300	200~1,300
	제3종일반	200~300	공업 지역	일반공업	200~350	150~350
				준공업	200~400	150~400

- 이와 함께,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.

####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

- 공장,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\*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(건폐율 상한, 종전 70% → 80% ~ 90%)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,

\* (방화지구)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/ 준주거·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

-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(도로, 철도 등)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.

#### ③ 기타 개정사항

-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(성·절토)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.

- 이번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(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)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‘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’으로 전망하면서, ‘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’이라고 밝혔다.